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
2023. 3. 23.

제24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
(소통담당관 소관)



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

2023년도 제1회 소통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303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3. 3. 10.
- 라. 회부일자 : 2023. 3. 10.

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145조, 「지방재정법」 제45조에 따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금천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.

3. 추경예산안 편성규모

가. 총 괄

(단위 : 백만원)

구	분	예산액	기정액			1회추경 (안)	비 고
			소계	당초예산	간주처리		
계		718,317	715,594	710,357	5,237	2,723	
일 반 회 계		695,027	692,304	687,067	5,237	2,723	
특 별 회 계		23,290	23,290	23,290	0	0	
	의료급여기금	590	590	590			
	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	592	592	592			
	주 차 장	22,108	22,108	22,108			

나. 일반회계

○ 세입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예산액 (A+B)	기 정 액			1회추경(안) (B)	비고
		소 계	당초예산	간주처리		
계	695,027	692,304	687,067	301	2,723	
자 체 재 원	162,357	162,357	162,357	-	0	
지 방 세	125,066	125,066	125,066	-	-	
세 외 수 입	37,291	37,291	37,291	-	-	
의 존 재 원	464,455	461,732	456,495	301	2,723	
지방교부세	19,326	19,326	19,261	65	-	
조정교부금등	140,055	140,055	139,823	232	-	
보 조 금	305,074	302,351	297,411	4,940	2,723	확정내시 반영
보 전 수 입 등	68,215	68,215	68,215	-	0	
순세계잉여금	68,215	68,215	68,215	-	-	
보조금사용잔액	0	-	-	-	-	

○ 세출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예산액 (A+B)	기 정 액			1회추경(안) (B)	비고
		소계(A)	당초예산	간주처리		
계	695,027	692,304	687,067	5,237	2,723	확정내시 반영
정 책 사 업	562,131	559,356	554,138	5,218	2,775	
재 무 활 동	11,868	11,868	11,868	-	0	
행정운영경비	121,028	121,080	121,061	19	-52	

4.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편성현황

가. 총괄

(단위 : 천원)

구	분	예산액	기정액	1회추경(안)	증감률
총	계	226,336,473	237,666,860	△11,330,387	△4.77 %
민원	감사담당관	255,994	255,994	0	0.00 %
소	통담당관	3,793,650	3,758,650	35,000	0.93 %
행	정안전국	150,108,490	142,832,531	7,275,959	5.09 %
	행정지원과	109,885,759	109,779,319	106,440	0.10 %
	자치행정과	11,351,922	10,840,683	511,239	4.72 %
	교육지원과	24,078,802	17,720,522	6,358,280	35.88 %
	주민안전과	4,024,958	3,724,958	300,000	8.05 %
	민원여권과	767,049	767,049	0	0.00 %
기	획경제국	53,531,915	72,419,261	△18,887,346	△26.08
	기획예산과	30,974,185	53,671,599	△22,697,414	△42.29 %
	지역경제과	14,616,048	10,805,980	3,810,068	35.26 %
	일자리청년과	6,377,742	6,377,742	0	0.00 %
	재무과	464,972	464,972	0	0.00 %
	세무1과	467,531	467,531	0	0.00 %
	세무2과	631,437	631,437	0	0.00 %
보	건소	18,646,424	18,400,424	246,000	1.34 %
	보건정책과	4,049,839	4,049,839	0	0.00 %
	건강증진과	11,401,090	11,401,090	0	0.00 %
	의약과	2,526,205	2,280,205	246,000	10.79 %
	위생과	669,290	669,290	0	0.00 %

나. 소통담당관 추경예산안

(단위 : 천원)

연번	부서명	세부사업명	사업개요	최종예산	기정액	1차 추경(안)
				873,566	838,566	35,000
1	소통담당관	미디어를 통한 구정 홍보	- 민간전광판 활용 구정 홍보	259,280	229,280	30,000
2	소통담당관	언론을 통한 구정 홍보	- 언론사 홍보 간담회	614,286	609,286	5,000

5. 검토의견

소통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검토결과

- 소통담당관 세출예산은 예산서(안) 127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정 예산에서 총 3,500만원이 증액 되었음.
- 세부 예산편성 내역은
 - 민간 옥외광고판 2개소에 송출할 우리구 브랜드 및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한 맞춤형 영상 콘텐츠 제작비 3,000만원과 기자간담회 개최 등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이 증액 되었음.
- 소통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은 대형 미디어를 활용한 우리구의 효과적인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영상 콘텐츠 제작비와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시 출입기자단 자치구 순회 기자간담회 및 간사단 현장방문 재개에 따른 업무추진비 증액으로 비교적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됨.

붙임 : 관계 법령 1부.

지방자치법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8661호, 2021. 12. 28., 타법개정]

제145조(추가경정예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.

지방재정법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7893호, 2021. 1. 12., 타법개정]

제45조(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(追加更正豫算)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
1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 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
2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 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·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

[전문개정 2011. 8. 4.]